

2025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Yangju Civil Ombudsman

이 보고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연간 운영 상황을

양주시장과 양주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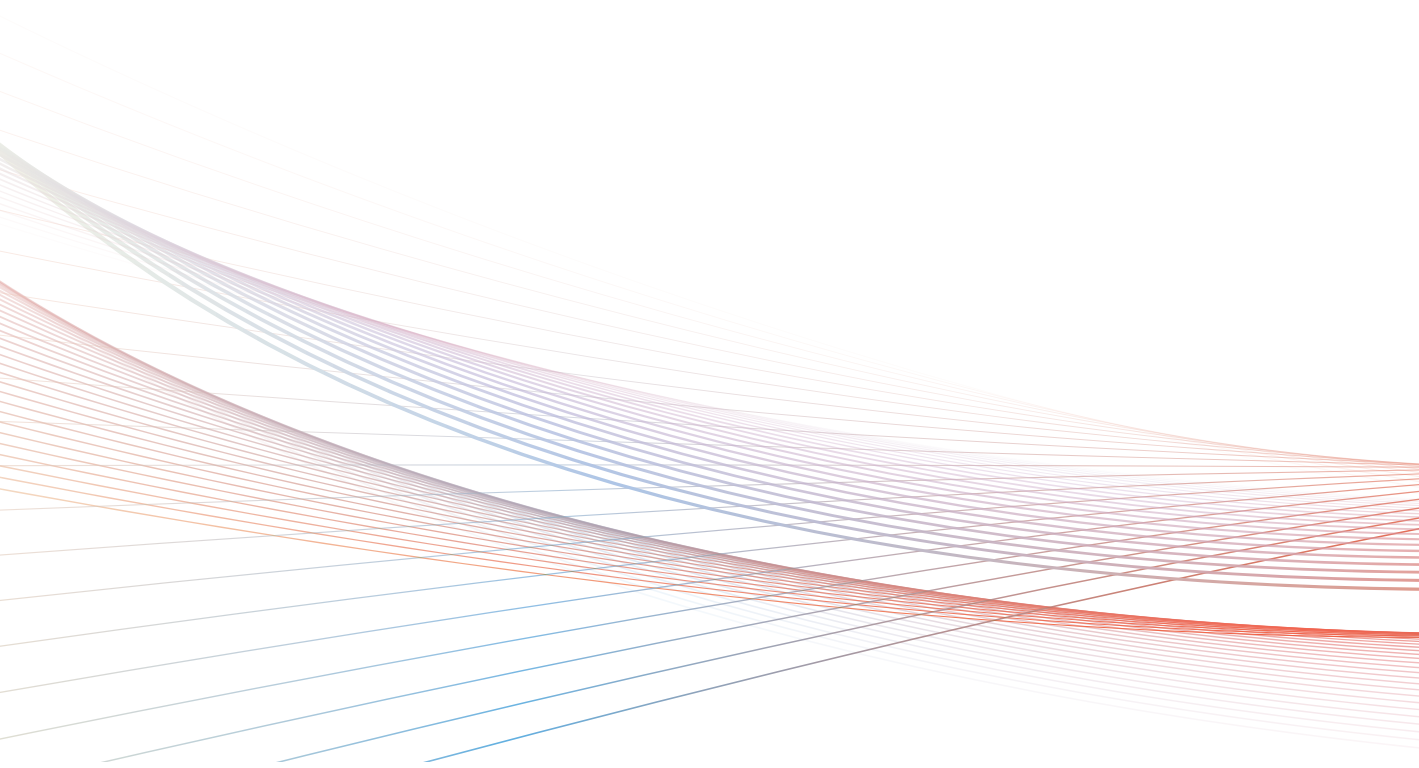
제작하였습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Yangju Civil Ombudsman



Yangju Civil Ombudsman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양주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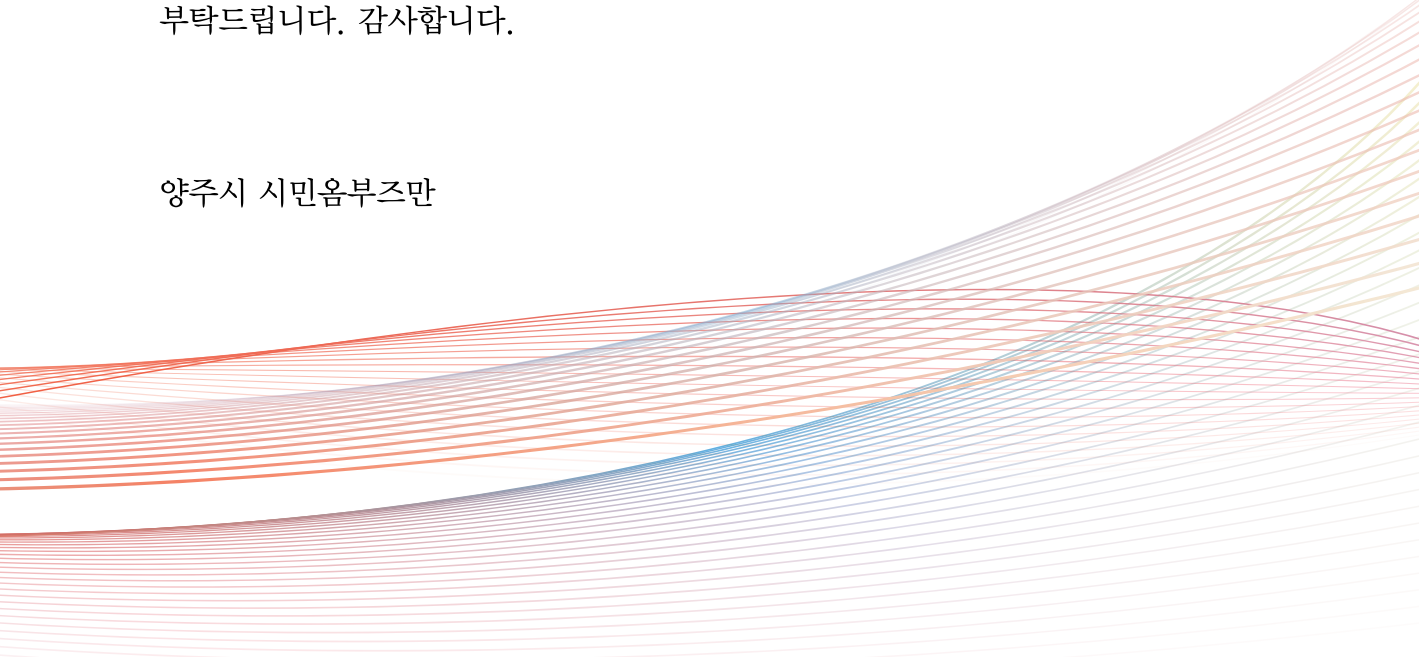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2023. 5. 1. 출범 이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양주시민의 해결창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 회의 의결을 거쳐 담당부서에 의견표명을 하는 등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의 34건보다 처리 건수가 줄긴 했지만 다소 복잡하고 숙고가 필요한 민원과 법령의 부재로 자체 처리가 힘든 부서업무의 자문역할도 아울러 병행하여 처리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2026년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시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01 **옴부즈만 제도란? / 7**

1. 옴부즈만이란? / 8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8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 9

0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 12**

1. 시민옴부즈만 도입배경 / 13
2. 시민옴부즈만 설치·구성 현황 / 13
3.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기능 / 15
4.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16

0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 19**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0
2. 고충민원 처리 상세내역 / 20
3. 시민옴부즈만 주요 처리사례 / 21
4. 시민옴부즈만 활동 및 홍보 / 57

04 **참고자료 / 59**

1.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0
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69
3. 고충민원 신청서 / 76

01

옴부즈만 제도란?

1. 옴부즈만이란?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01 옴부즈만 제도란?

0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옴부즈만이 시민의 대리인 입장에서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행정재량의 확대

- ▶ 오늘날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 또한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역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고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한계

- ▶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중의 하나인 사법적 구제수단은 사후통제 수단으로 비용과 절차,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해서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행정의 권익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엄격한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비교]

구분	옴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 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 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구제
기간	제한 없음	•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접근성	접근성 높음 (인터넷, 서면, 방문 등)	행정소송보다 접근성 용이	접근성이 어려움
비용	없음	행정소송보다 비용 부담 적은편임	비용 부담 높음
한계	구속력 없음	• 청구기간이 짧은 편임 • 구제 대상이 제한적	• 사건의 구체성을 필요로 함 • 과도한 비용 부담

0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 완화

- ▶ 옴부즈만은 자치단체 관할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 ▶ 민원인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축소·완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를 풀어줌으로써 일반시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격는 고충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 ▶ 또한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행정기관 스스로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통한 통제기능

-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

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 ▶ 옴부즈만은 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집행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능

- ▶ 옴부즈만은 민원처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해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행정행위의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 또한 옴부즈만 제도는 지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과오행정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행정의 공개성 확대

- ▶ 옴부즈만은 민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은 문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옴부즈만은 관련 민원 정보를 보다 많이 공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고충민원의 처리

-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소송 제도와 비교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옴부즈만은 민원을 조사·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객지향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 비교적 공정하고 중립적인 고충민원 조사

- ▶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존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보완

- ▶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옴부즈만 제도는 사법적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침해의 소지가 많아지면서 그 보완적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기존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0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1. 시민옴부즈만 도입배경
2. 시민옴부즈만 설치·구성 현황
3.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기능
4.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0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01 시민옴부즈만 도입배경

양주시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행정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 및 시정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5월 1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옴부즈만 도입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02 시민옴부즈만 설치·구성 현황

○ 시민옴부즈만 설치

-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12월
- ▶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23년 2월

- ▶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 개최(옴부즈만 추천) : 2023년 3월
- ▶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개시 : 2023년 5월 1일
-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3년 5월

○ 시민옴부즈만 구성

- ▶ 명 칭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 ▶ 운영인원 : 5명[상임1명, 비상임 4명]
- ▶ 임 기 : 4년(2023. 5. 1. ~ 2027. 4. 30.) 단임제
- ▶ 운영장소 : 양주시청 감사담당관(4층)
- ▶ 주요역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 ▶ 지 위 :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 보장

○ 시민옴부즈만 자격 요건

- ▶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현황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나 윤 준 (상임)	- 감사원 과장 -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 서울시 강남구 옴부즈만 - 서울시 광진구 옴부즈만
	정 상 복 (비상임)	- 감사원 국장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상임감사 - 해양환경공단 비상임감사 - 서정대학교 교수
	정 용 준 (비상임)	- 인천시 연수구 부구청장 - 행정자치부 재난안전관리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교육원 원장
	김 순 도 (비상임)	- 디자인그룹 예상건축사무소 대표건축사(현) -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현)
	정 영 미 (비상임)	- 법률사무소 지윤 대표변호사(현) - 법률사무소 송무 변호사

03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기능

○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조례 제7조)

- ▶ 양주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 양주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 양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조례 제3조)

-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 ▶ 양주시장이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조정 등 처리
-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04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 고충민원의 의미

-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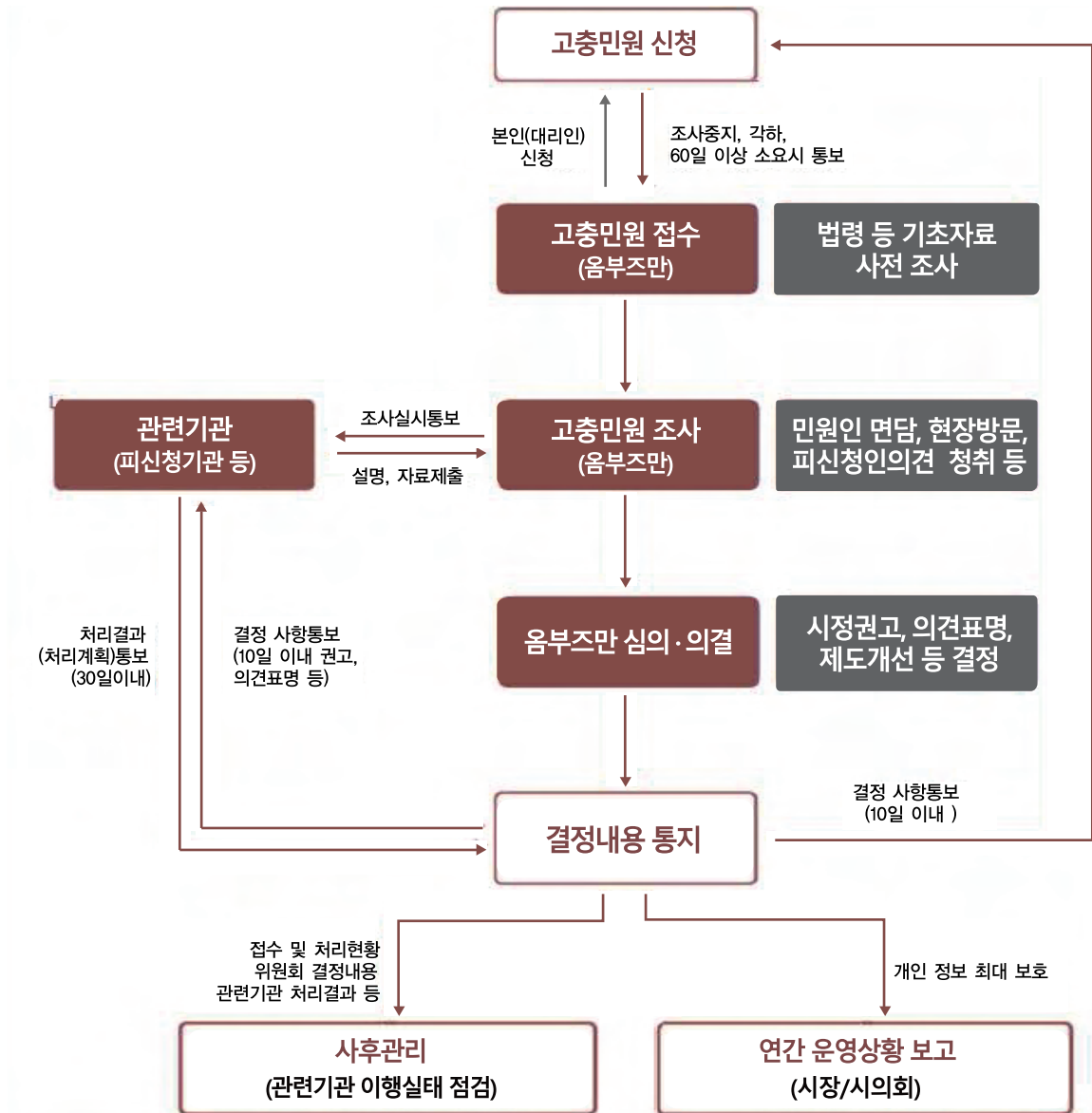
- ▶ 양주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느낀 양주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고충민원 처리절차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분	내 용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분의 취소 • 변경 •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경우
부서자문	고충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행정적, 법률적 쟁점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시하는 경우
심의결과안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한 경우
상담종결 (민원수용)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담당부서와 협의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민옴부즈만 의결서 작성없이 상담만으로 민원수용한 경우
상담종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서 상담만으로 기각, 각하한 경우
합의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신청인이 수용한 경우
이송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련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0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처리현황
2. 고충민원 처리 상세내역
3. 시민옴부즈만 주요 처리 사례
4. 시민옴부즈만 활동 및 홍보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01 고충민원 처리현황

○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완료							처리 중
	소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부서 자문	심의결과 안내	상담 종결 (민원수용)	상담 종결	
14	13	-	3	3	1	4	2	1

- ▶ 2025년 총 1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단순민원은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옴부즈만은 복잡하고 숙고가 필요한 민원 위주로 처리함
- ▶ 또한 담당부서에 모호한 법령 등으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부서자문을 받아 의견표명 등을 함으로써 부서 자문역할도 수행함

02 고충민원 처리상세내역

연번	제목	처리구분
1	개인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표명 (불수용)
2	○○통합가압장 적정 매각금액 산정 요청	의견표명 (수용)
3	미분양토지 공급가격 인하 가능 여부	의견표명 (불수용)
4	토지재산제 부과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부서자문

5	예금에 대한 포괄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부서자문
6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부서자문
7	양주시 공공시설관리·운영조례 재개정 요청	심의결과안내
8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 요청	상담종결 (수용)
9	재산세 행사 제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청	상담종결 (수용)
10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청	상담종결 (수용)
11	장애인보호시설 내 CCTV 설치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상담종결 (수용)
12	양주시 이투스패스 수정 건의 요청	상담종결
13	직불금 부당지급에 대한 민원	상담종결
14	감사담당관의 부실감사, '허위보고와 진상규명' 요청	처리중

03 시민옴부즈만 주요 처리 사례

가. 개인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고충 2025-01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결 론 : 의견 표명

4. 주 문 :

① 신청인 등 3명 소유의 양주시 남면 ○○리 ××번지 및 △△번지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08㎡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등을 하고 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현황 도로 점유 민원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함.

◆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양주시 남면 ○○리 ××번지(지목 전) 및 △△번지(지목 대) 토지 합계 면적 3,273㎡ 중 308㎡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 포장한 후, 도로 지하에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308㎡에 대한 보상과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분 141㎡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를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08㎡와 도로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 141㎡에 대한 보상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시 판결문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

3. 사실관계

가. ○○리 이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 현황도로는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포장된 새마을 도로라고 함.

나.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경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인근 주택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오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2024년 11월경 도로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고, 신청인 등 소유의 토지 308㎡ 정도가 아스팔트 포장에 덮여 있으며 141㎡ 정도가 분리되어 있음.

라. 이 건 ○○리 ××번지 및 △△번지 토지는 신청인 등 3인이 2004. 5월 ●●●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는 1999. 8월 매매 취득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08㎡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08㎡ 관련

대법원 판례(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도로의 임의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자기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적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의 위치,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일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라든지,

또는 국가 등의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른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또는 분할매각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공사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어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로 그 재정보조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이 건 민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현황 도로는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오다가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포장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도로 지하에 2011년 11월경 상수도관을 매설하거나 2024년 11월경 하수도관을 매설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에 토지소유주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으며 신청인 등 소유의 토지를 분할 매각한 등의 사실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 등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증거가 없음.

더욱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308㎡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고, 신청인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심하기 어려움.

참고로 2023. 5월 다른 민원인(임××)이 이 건 민원과 유사한 내용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195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매입 당시 사건 토지들의 도로 편입에 따른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를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매각한 것을 볼 때 자신이 소유한 토지들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사건 토지들을 진입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서 소송비용 및 소송대응 인력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도로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 141㎡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민원의 경우 공익사업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짐.

5. 결론

그러므로 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08㎡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등을 하고 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현황 도로 점유 민원에 대하여는 소송없이 곧바로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6. 조치 결과

불수용

<별지> 관계법령 등

1.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9. 12. 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대법원 판례(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원고, 상고인 정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7. 선고 88나4012 판결

주 문

가. 원판결 중 대전시 동구 효동 168의 10 도로 343평방미터와 같은 동 147의 5 대 314평방미터, 같은 동 147의14 대 129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도로의 임의제공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자기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적어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의 위치, 환경때문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일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라든지, 또는 국가 등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른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또는 분할매각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간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공사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어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로 그 재정보조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대전시 동구 효동 168의 10 도로 343평방미터 부분이 1969.2.10.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자 위 토지부분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를 1974.경부터 1976.경 사이에 제3자에게 각 분할매각함으로써 위 168의 10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중 1980.11.2.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피고의 보조금과 주민부담금으로 위 토지 중 그 실시부분에 하수도공사를 하였고, 1982.11.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위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차도브력공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에 차도브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가 그 공사비 중 약 70퍼센트를 지원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같은 구 효동 147의 5 및 147의 14 각 토지위에 위 도시계획의 도로예정선에 맞추어 건축을 하게 되자 각 그 실시부분이 공터로 남게 되어 현재 위 168의 10 및 147의 5, 147의 14 각 토지 중 각 그 실시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가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위

하수도공사에 있어서 원고가 승낙을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위 168의 10 토지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168의 10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시에 위 147의 5 및 147의 14 각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경위로 포장공사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 168의 10 토지는 물론 위 147의 5 및 147의 14 각 토지 중 원심 실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관리 사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이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 및 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가 아니면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끝으로 소론은 이 사건 토지 중 천동 178의 11대 106평방미터도 피고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인 김삼구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가 위 토지에 어떠한 시설 내지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에 들어가게 되어 원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타에 매각한 결과 위 토지부분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 중 대전시 동구 효동 168의 10도로 343평방미터와 같은 동 147의 5 대 314평방미터 같은 동 147의 14 대 129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미분양토지 공급가격 인하 가능 여부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고충 2025-03

2.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개발피에프브이(주) 사장

3. 결 론 : 의 건 표 명

4. 주 문 :

○○개발피에프브이(주)가 미분양토지에 대해 감정가격 이하 공급계획을 신고해 오는 경우 적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함.

◆ 이유

1. 신청원인

경기도 양주시 ◇◇동 ××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부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양주시가 일부 출자(42%)에 지분 참여하여 설립된 ○○개발피에프브이(주)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에 대하여 부분 준공되었음.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646,680㎡) 내 가처분용지 중 단독주택,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업무시설(계 58,228㎡)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 공급을 위하여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고, 감정가격으로 수익계약 공급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 토지로 남아있으며 장기 미분양에 따른 금융 부담 가중 및 시행사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임.

이에 시행자는 2025. 7월 현재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양주시에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방안 필요함.

2. 사실관계

가. 2016. 2. 4. ○○개발피에프브이(주) 법인 설립

나. 2017. 3. 13.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다. 2020. 12. 23.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

라. 「도시개발법」

○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부칙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①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변경)을 제출하는 것인지, 승인받는 것인지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서를 제출한 2020. 12. 23. 당시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2025. 7월 현재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변경)을 제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변경)을 제출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지, 자기 완결적 신고 인지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절차법」 제40조에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변경)을 제출하는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여짐.

③ 조성토지 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지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7-0636, 2018. 2. 8.)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의 의미가 조성토지 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간의 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제2항), 추첨(제3항), 수의계약(제5항) 등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6항은 조성토지 등을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 각종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이 감정가격과 달라질 수 있도록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조성토지 등을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공급방식에 따라 최종 공급계약에서 정해질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법무지침」 5-1-4에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점,

헌법재판소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이 사업자의 사적 자치의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일 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0 결정례 참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조성토지 등 공급을 위하여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모두 유찰된 후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 토지로 남아있으며 장기 미분양에 따른 금융 부담가중 및 시행사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로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변경안에 대해 행정청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다 해도 그 행위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에 그 위반을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변경안에 따라 실제 조성토지 등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유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민법」 제104조), 계약 상대방과 짜고 가짜 계약을 체결한 경우(「민법」 제108조)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행정청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보여짐.

4. 결론

그러므로 ○○개발피에프브이(주)가 미분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이하 공급계획을 신고해 오는 경우 적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5. 조치 결과

검토 중

<별지> 관계법령 등

1. 「도시개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 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부칙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2022. 6. 21.>

1.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제57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22. 6. 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5.>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 2025. 1. 31.>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 3. 26., 2017. 12. 5.>

3.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

제1장 조성토지의 공급

5-1-4.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감정평가

5-4-1.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수익계약 등

5-6-1.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1)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 (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 (3)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

- (4)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 (5) 기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34조(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행정절차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제40조(신고)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6.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7-0636, 2018. 2. 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의 의미가 조성토지 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간의 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제2항), 추첨(제3항), 수의계약(제5항) 등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6항은 조성토지 등을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 각종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이 감정가격과 달라질 수 있도록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조성토지 등을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공급방식에 따라 최종 공급계약에서 정해질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5-1-4에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임.

7. 헌법재판소 결정례(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0)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이 사업자의 사적 자치의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일 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치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토지 재산세 부과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1. 민원표시: 자문 2025-04

2.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자문요청요지 :

민원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2021. 4. 5. 공장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비 6억여 원을 들여 진입로 공사, 경사도가 심한 자연녹지에 있는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장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4. 사실관계

- 가. 2021. 1. ~ 2022. 12. 개발행위 허가
- 나. 2021. 4. 5. 공장용 건축물 건축허가
- 다. 2023. 3. 23. 공장용 건축물 착공 신고
- 라. 2023. 4. 4. 공장용 건축물 착공 허가

5.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과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 판결(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① 건축허가를 받아 ② 건축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③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며, 건축공사의 대략적 공종은 [표]와 같음.

[표] 건축공사 대략적 공종

공종	작업설명	공종 특징
가설공사	규준틀, 기준점, 가설펜스 등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 현장 안전확보 및 작업효율 증진
토공사	건물 기초작업을 위한 터파기 작업 및 부지정리작업	정확한 측량, 지반 안정성 확보
기초 콘크리트공사	건물의 하부바닥을 구축하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	기초 안정성 확보
골조공사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성 작업	구조적 안정성 확보
지붕, 벽체공사	지붕과 외부벽체 및 내부벽체 시공	미관과 기능성, 안정성 강화
창호, 유리공사	채광과 환기를 고려	에너지율, 디자인요소 고려
금속공사	금속부재 활용	강도와 내구성 고려
수장공사	외부 마감재와 내외부 인테리어 마감 작업	디자인 완성도 등 중요
마감공사	도배, 페인팅 등	품질관리 등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법적 기준 준수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절.성토하거나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옹벽 등을 구축하는 공사는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높이 2m 이상의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건 민원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1. 1월부터 2022. 12월까지 경사도가 심한 자연녹지.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입로공사, 절토면 보호용 철근 콘크리트 옹벽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토지(대지)를 조성하면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옹벽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가 되었을 뿐이고,

2023. 4. 4. 공장용 건축물 건축 착공 허가를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장용 건축물(주구조: 일반철골구조, 지붕마감재료: 샌드위치패널, 연면적: 198㎡)에 대하여는 일반철골구조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공사 등 아무런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③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6. 결론

그러므로 이 건 민원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별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와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垓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 예금에 대한 포괄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1. 민원표시: 자문 2025-05

2.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자문요청요지 :

2008. 9월 및 2009. 9월 부과한 재산세 및 주민세(양도소득분) 계 47,420,090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여, 2010. 1월 민원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8. 8월 압류해제하였고, 다시 2023. 6. 20. 금융기관에 민원인 소유 예금계좌에 대한 포괄압류를 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은 초과압류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무효이니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실관계

가. 양주시장은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2010. 1월 민원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8. 8월 압류해제하였음.

나. 2023. 6. 20. 기업은행 등 19개 은행에 민원인 소유 예금계좌에 대한 포괄압류를 설정함.

5.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대법원 판례(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에 따르면 예금거래 실태, 잔액, 입출금 내역 등 예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부정되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본인 소유 계좌는 모두 압류당시와 이후 거래내역이 없는 소액금융재산으로 확인된 바,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무효인 처분이므로 시효완성을 인정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29호로 일부 개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결요지】[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판결요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재개정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심의 2025-07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양주도시공사사장)
3. 결 론 : 심 의 결 과 안 내
4. 주 문 :

2024년 12월 9일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조례 개정의 위법·부당 등 판단은 우리 시민옴부즈만의 업무 범위가 아님과 담당부서인 청년체육과는 1회 이용제가 수요 부족으로 폐지된 만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1회 이용제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안내함.

◆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2024년 12월 9일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를 폐지하였는데, 해당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한차례의 홍보나 고지를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한 적이 없으므로 시민들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음.

하지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개정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한 귀책을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니, 다시 1회 이용제를 부활시키고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인식하게 한 후에 실효성을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존치를 논의해 주기를 요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한차례의 홍보나 고지를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에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사안이라 별도의 온라인 공지 없이 안내데스크에만 개첨하여 안내하였고,

다시 1회 이용제를 부활시키고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인식하게 한 후에 실효성을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존치를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3인의 소규모 인원이 이용할 경우에도 농구, 배드민턴 등에 필요한 해당 시설을 준비하고 조명과 냉·난방기구를 가동하는 등 인력과 운영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점과 전용 이용제 이용객보다 1회 이용제 이용객이 먼저 인터넷 예약을 한 경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용이용제 이용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1회 이용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으나 1회 이용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1회 이용제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음.

3. 사실관계

가. 2021. 7월부터 다목적체육관(옥정호수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전용 이용이 없는 시간대에 한하여 1회 이용제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4. 12. 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가 폐지되었고, 전용 사용제만 남게 되었음.

① 조례 개정 전 및 개정 후 전용 이용료(금액단위: 원)

체육경기(2시간 기준)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 행사(4시간 기준)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24,000	36,000	36,000	54,000	176,000	264,000	264,000	396,000

② 조례 개정 전 1회 이용료(금액단위: 원)

구분	정회원		1회 이용		기준 이용시간 1일 1회 2시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성인	-	-	3,200	3,200	
청소년	-	-	2,800	2,800	
어린이	-	-	2,400	2,400	

나. 2024. 4. 26.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2024. 12. 2. 개최된 양주시 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록에 이용률 저조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를 폐지한다는 언급은 없으나, 2025년 7월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2021년 7월 시행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1회 이용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였다고 답변함.

다. 2025. 8. 9. 민원인이 양주시 감사담당관에 양주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 폐지 관련 부당행정

및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회 이용제를 추진할 당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채 안내데스크에만 고지하였고, 1회 요금제 폐지 시에도 홈페이지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양주시공사와 체육시설 담당부서인 청년체육과에 주의 처분됨.

라. 양주시 다목적체육관 이용 시 원가는 시간당 74,000원 정도로 추산되나, 1회 이용제 성인 이용객 1인당 이용료가 1,600원/시간이라서 5명이 1회 이용제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8,000원/시간이고 원가 회수율이 10.8%(전용 이용제 평일 주간 12,000원/시간이고 원가회수율 16.2%)이나, 이용 인원이 더 적어지면 원가 회수율은 더 낮아져서 1명만 이용할 경우 2.2%임.

마. 경기도권 다른 시·군의 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군포 등 16개 시·군의 경우 1회 이용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의 경우 5명 이상 또는 종목별로 이용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와 2조에 따르면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는 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임.

그리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1996. 9. 20. 선고 대법원 95누8003 판결 참조)하나, 양주시민 등이 공공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여 이 건 조례 개정 사항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조례 개정의 위법·부당 등 판단은 우리 시민옴부즈만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보임.

5. 결론

그러므로 2024. 12. 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된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제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주문과 같이 심의결과 안내함.

<별지> 관계법령 등

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과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상담 2025-08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결 론 : 상 담 종 결 (민 원 수 용)

신청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수리함.

◆ 이유

1. 신청원인

자동차 지분 99%를 갖고 있는 신청인은 지인이 갖고 있는 1% 지분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자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이전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며 이전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하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2.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유권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법원의 소유권 확정 판결문을 제시하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함.

< 별 지 > 관 계 법 령 등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재산권 행사 제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상담 2025-09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결 론 : 상 담 종 결 (민 원 수 용)

신청인 소유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2010. 3. 2.부터 10년 경과된 2020. 3. 2. 이후 과세된 부과제척기간(5년)내의 재산세는 소급하여 경정함.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삼송동 000번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해당 물건지는 201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2025. 7월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재산세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부과되었으니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사실관계

가. 2010. 3. 2. 경기도제2청고시 제 2010-xxx호 도시계획고시문에 따르면 삼송동 000번지의 일부는 도로, 공원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됨.

나. 신청인 소유의 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창고임.

다. 해당 물건에 부과된 2025년 재산세(건축물) 관련 총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1,701,450원임.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2025년 재산세 관련 세액을 부과하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는 등으로 총 815,334원을 과다 부과하였음.

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세액(원)
조정전	881,954	286,157	356,952	176,390	1,701,453
조정후	440,977	—	356,952	88,190	886,119
차액 (과다분)	440,977	286,157	—	88,200	815,334

<별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됨.

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상담 2025-10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결 론 : 상 담 종 결 (민 원 수 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인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에 따라 2022년~2025년 재산세(토지) 과세유형을 분리과세하여 결정함.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인 남면 소재 농지 14,781㎡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므로 재산세(토지) 과세유형을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 2022년~2025년 종합합산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사실관계

가. 해당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일부 면적에는 콩 등의 밭작물이 심어져 있음.

나. 해당 토지는 사찰과 직선거리 10km 정도 떨어져 있음.

다. 신청인은 해당 토지를 사찰 신도에게 임대하였고, 2025년 연간 총임대료는 2,420,000원임.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신청인 해당 토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경작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농지의

연간 최소 사용료보다 적은 연간 임대료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연간 최소 사용료인 10,346,700원[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
1,034,670,000원의 1천분의 10]보다 적은 2,420,000원을 임대료로 받는 이 건 민원 해당
토지는 분리와세 대상으로 판단됨.

<별지> 관계법령 등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라. 사찰 소유의 경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이하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⑤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이하 생략)

6.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106...시행령102-4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 중 임대농지의 수익사업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토지 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대 중인 농지로서 연간 임대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농지의 연간 최소 사용료

자. 장애인보호시설 내 CCTV 설치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상담 2025-11
2.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3. 결 론 : 상 담 종 결 (민 원 수 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계인 동의 절차 위반, 안내판 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하기로 함.

◆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서 CCTV를 이전설치하면서 ① 특정인만 오가는 길목에 설치한 카메라 각도 변경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을 위반하였고 ② 장애인이 탈의와 취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위 카메라 설치를 하면서 촬영되는 사람들과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동의를 받지 않아서 같은 법 제25조의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1호를 위반하였고, ④ 카메라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같은 법 제25조의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항을 위반하였으니 시정 요청함.

2.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특정인이 통행하는 길목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계인 동의 절차 위반, 안내판 미설치 등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3항,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제1호,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별지> 관계법령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②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제24조(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활동 및 홍보



시민옴부즈만 월례회의



시민옴부즈만 현장 조사(공공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민원)

시민옴부즈만 활동 및 홍보



양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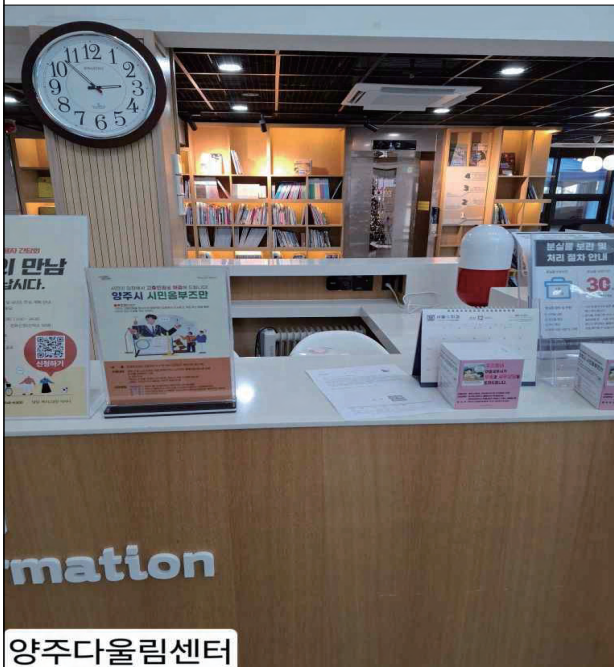


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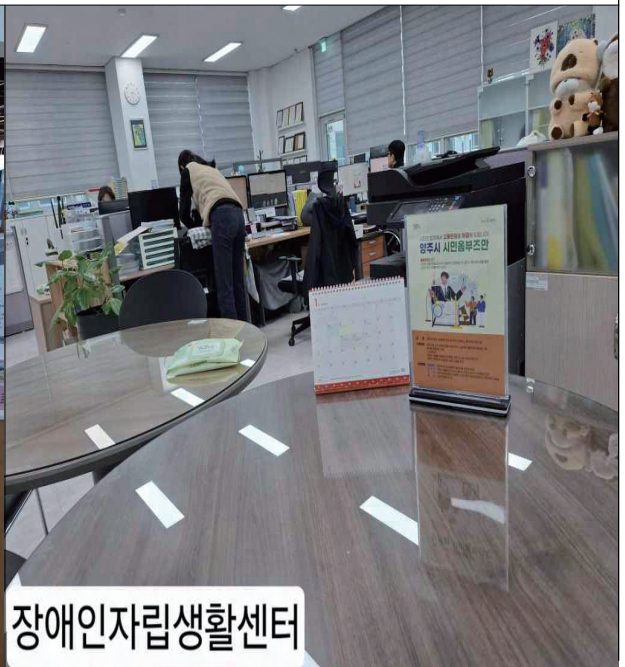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일부 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배너



양주다울림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단체 홍보 배너

04

참고자료

1.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과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3.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부대표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의 의결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ombudsman을 해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ombudsman의 제척·기피·회피) ①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ombudsman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ombudsman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ombudsman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ombudsman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ombudsman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ombudsman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ombudsman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동일한 고충민원의 통보)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에게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읍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읍부즈만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읍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시 소속기관 등은 읍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읍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31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61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민옴부즈만 운영

제2조(위촉 방법)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 추천자 중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옴부즈만 회의소집) 옴부즈만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회피에 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② 옴부즈만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 실태를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3조(신청 및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접수 및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통보)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합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사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읍부즈만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읍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읍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읍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읍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읍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읍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0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읍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읍부즈만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등

제21조(사무국)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민읍부즈만 활동지원 담당부서의 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장은 사무국에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공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및 교부 등의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인 조례」 및 「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비밀유지 서약) 옴부즈만 등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읍무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무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읍무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511호,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충민원 신청서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	기관명	
	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 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도약! 함께양주

2025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발 행 2026년 1월
퍼 낸 곳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4층
대표전화 031) 8082-5124
홈페이지 <http://www.yangju.go.kr>